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안 번호	12652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25. 9. 3.
제출자 : 정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조세채권 확보 및 강제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된 국세의 납부 독촉을 받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추가하며, 고액·상습체납자 감치(監置) 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납된 국세와 관련된 이의신청·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, 「국세기본법」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 등에는 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실태조사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

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 ·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3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1항제1호, 제2호 및 제4호”를 “제1항 각 호”로 한다.

5. 가상자산의 매각

제115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체납자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.

1.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
2.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 국세를 체납한 경우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

제5장(제116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장 별 칙

제116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0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115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고액·상습체납자의 감치에 관한 적용례) 제11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 이후 국세청장이 감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<p>제10조의2(실태조사) ① 지방국세 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체납 원인,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체납 현황에 관한 조사(이하 이 조에서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</p> <p>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원을 채용하여 그 조사원(이하 “조사원”이라 한다)에게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③ 조사원은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의 방법·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</p>

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체납자
를 감치에 처하지 아니한다.

1.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
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경우

2.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
가 그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한
국세를 체납한 경우

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계산한 체납액 납부비율
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----- 제3항-----

-----.

⑤ ~ ⑦ (현행 제4항부터 제6
항까지와 같음)

⑧ -----

----- 제7항

-----.

② (생 략)

③ 국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
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
체납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
는 바에 따라 소명자료를 제출
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
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④ ~ ⑥ (생 략)

⑦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
감치집행 시 감치대상자에게 감
치사유, 감치기간 및 제6항에
따른 감치집행의 종료 등 감치
결정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
그 밖에 감치집행에 필요한 절
차에 협력하여야 한다.

<p>⑧ (생략)</p>	<p>⑨ (현행 제8항과 같음)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5장 벌칙</u></p>
<p><u><신설></u></p>	<p><u>제116조(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)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제10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실태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한다.</u> <u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 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○ 수입 : △9억원

		(단위: 억원)							
구 분		연 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 계	연평균
지출				해	당	없	음		
	소 계(A)								
수입	○ 체납자에 대한 실태 조사 근거 마련 (국정법 §10의2, §116)			추	정	곤	란		
	○ 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 (국정법 §103)		△1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	○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(국정법 §115)			추	정	곤	란		
	소 계(B)		△1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총 비용(A-B)		△1	△2	△2	△2	△2	△2	△9	△1.8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제10조의2, 제116조 (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)	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유형화하여 사례별 맞춤형 체납징수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세수가 증가하게 됨
2	제103조 (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)	가상자산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세수가 감소하게 됨
3	제115조 (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)	국세 체납액을 50%이상 납부 시에는 감치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납세자의 체납액 납부 요인이 발생하여 세수가 증가하게 됨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제10조의2, 제116조 (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)	×	체납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납부될 체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2	제103조 (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)	○	
3	제115조 (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)	×	감치 대상 제외로 인해 납부될 체납액을 합 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개정 법률안이 '25.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
된다는 전제하에 작성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①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 마련(국정법§10의2, §116)

○ 세수증 : 추정곤란

- 체납자를 유형화하여 맞춤형 체납징수를 추진하여 납부될 체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② 가상자산 직접 매각 대행 근거 마련(§103)

○ 세수감 : △2억원

- 최근 3년간('21년~'24년) 연평균 압류 가상자산(365억원) - 연평균 현금징수 가상자산(181억원) = 연평균 가상자산 매각 대행 의뢰 추정액(184억원)
- 가상자산 매각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수수료율: 1.2%
- '26.7.1. 시행으로 '26년은 연 1억원 세수감 추정

③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(§115)

○ 세수증 : 추정곤란

- 감치 대상 제외로 인해 납부될 체납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

IV. 부대 의견

-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VII. 작성자

○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·국장
전해일	박해용	김성수	조만희

○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해용	044-215-4152	pplong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-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II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-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III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- '26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·감면 효율화,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

IV. 부대의견

-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-	-	해당사항 없음 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VI. 작성자

-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팀장	실장·국장
전해일	박해용	김성수	조만희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해용	044-215-4152	pplong@korea.kr

*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